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2007.4.18(수)

제259회 임시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반의 및 회부인자

○ 제출일자 : 2007년 4월 5일

○ 회부일자 : 2007년 4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제259회 충청북도 임시회

○ 2007. 4. 18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사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기획관리국장 신강택)

가. 제안이유

○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,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4항)
-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의 개선(안 제17조제2항)
 -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 포함
 - 육아휴직자의 연가 활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, 육아휴직제도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
- 헌혈 참여 시 공가 인정(안 제21조제10호)
 -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
-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제도 개선(안 제22조제2항 및 제10항)
 -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고,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·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·사산휴가를 주도록 함
-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(안 별표2)
 -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 휴가를 얻도록 함
 -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분위기 조성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: 이명우)

- 본 조례안은
 - "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"에서 규정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,

- "혈액관리법"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사회 헌혈운동의 자진참여,
- 그리고 여성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"모자보건법" 등 이들 개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"지방공무원 복무규정"을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안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 제목 "(근무시간)"을 "(근무시간 등)"으로 하고,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교육감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21조제5호를 삭제하고, 동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8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
10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혈액에 참가할 때

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.

⑩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

향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증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제5조의2·제17조제3항·제20조제1항·제21조중 "다음 각 호의 1"을 각각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제27조중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을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으로 한다.

별표 2의 출산란 다음에 입양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| | |
|-----|-----|----|
| 입 양 | 본 인 | 14 |
|-----|-----|----|

비 고

-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,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안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.
-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2조 (근무시간 등) ①지방공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·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④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
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
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2 (공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.

1. 「병역법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·소집·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
2. 공무에 관하여 국회·법원·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
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
4. 승진·전직시험에 응시할 때
5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
6. 「혈액관리법」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
7.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
8. 천재지변·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
9. 올림픽·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

제7조의3 (특별휴가) ①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다만, 이 영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③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,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.

④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(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(이하 "임신기간"이라 한다)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□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

제30조 (온라인 원격근무)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방지 그 밖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

제29조 (특별훈련대상자의 선발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특별훈련대상을 선발하여야 한다.

1.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자
2.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3. 필요한 학력·경력등을 갖춘 자
4. 훈련이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
5.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

□ 모자보건법

제14조 (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)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.

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
2.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
3.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
4.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

5.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